신속확인심의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99항, 신기술 및 융·복합제품 신속확인 제도 업무 지침에 의거하여 신속확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함에 있어 업무 수행 중에 지득한 기밀사항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민사·형사상의 책임과 보안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위)

성명

(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